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교통국장)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7일

2. 제안이유

-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사항('23.5.30. 개정, '23.7.19.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1조제2항)
-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항 ~ 제3항)

4.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청취

- 9. 20.~10. 10.까지 21일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을 예고한 결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⁶⁾(’22.1.18 개정, ’23.1.19. 시행)을 반영하여 조례 제16조제2항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를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로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 대구시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 중 저상버스 도입 시 도로의 구조·시설 등 저상버스 운행 적합성을 고려하도록 한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적합한 문구와 예외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답변으로 제출하였음.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체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과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과 관련하여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권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제12항에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은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 내용과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나,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 **안 제14조제2항**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에 대해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과 경상북도 전역 및 경상남도 창원군까지 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제3항**은 광역이동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음.

 - 이는 교통약자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간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대구시에서는 상위법 개정 이후 국비를 확보하였고,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와 연접한 경북·경남 10개 시·군을 운행범위로 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시범 운영계획		
구 분	현 행(나드리콜)	광역이동 시범운영
운영시간	매일 24시간	매일 24시간
운영범위	대구관내, 시내버스 운행하는 연접 시군 (경산, 고령, 칠곡)	연접 10개 시군(경북9, 경남1) 1개 이상의 연접 도(경북) 전역
이용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보행상 중증장애인
운영대수	특별교통수단 199대, 교통약자택시 318대	특별교통수단 5대
운영인력	213명(사무인력16, 운전원187, 상담원24)	9명(운전원8, 상담원1)
운영방법	즉시콜	전일 예약제(9시~16시) 왕복운행(도착지 최대 2시간 대기)
이용요금	기본 1,000원, 한도시내 3,300원, 시외 6,600원	현행요금 동일
운영예산	262억원	6.1억원(인건비4.4, 유류비1.2, 유지비0.5)

-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보면 보행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량 증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붙임자료 참조]

-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교통약자들이 사회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중교통수단과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대상자들의 이용률을 높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음.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 **운영현황**

- 운영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처) 위탁
- 사 업 비 : 27,192백만원(기금 7,212, 국비 945, 시비 19,035)
- 차량대수 : 총 509대 (특별교통수단 199, 교통약자콜택시 310)
- 운행시간 : 매일 24시간 운행
- 운영인력 : 217명 (관리직 16, 상담원 24, 운전원 196)
- 이용대상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중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그 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약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나드리콜 연도별 예산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계	18,500	20,677	23,606	27,192
복권기금	6,728	6,570	6,570	7,212
국비	-	-	-	945
시비	11,772	14,107	17,036	19,035

□ **연도별 증차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60 (30)	100 (40)	110 (10)	122 (12)	148 (26)	212 (64)	283 (71)	338 (55)	400 (62)	425 (25)	430 (5)	443 (13)	490 (47)	509 (19)	528 (19)
특별교통수단 (증차대수)	60 (30)	70 (10)	80 (10)	92 (12)	103 (11)	112 (9)	123 (11)	128 (5)	140 (12)	145 (5)	150 (5)	163 (13)	180 (17)	199 (19)	218 (19)
교통약자택시 (증차대수)	-	30 (30)	30 (-)	30 (-)	45 (15)	100 (55)	160 (60)	210 (50)	260 (50)	280 (20)	280 (-)	280 (-)	310 (30)	310 (-)	310 (-)

□ 이용현황('23년 9월말 기준)

○ 장애유형별 · 차량별 이용건수

구분	계	노약자	지체	뇌병변	신장	시각	지적	자폐성	유공자	기타
전체	1,294,677 (100.00%)	250,514 (19.35%)	257,912 (19.92%)	208,814 (16.13%)	196,531 (15.18%)	134,480 (10.39%)	104,666 (8.08%)	22,351 (1.73%)	6,098 (0.47%)	113,311 (8.75%)
특별교통 수단	300,924 (100.00%)	50,451 (16.77%)	90,563 (30.09%)	77,117 (25.63%)	26,872 (8.93%)	19,060 (6.33%)	14,764 (4.91%)	3,099 (1.03%)	1,028 (0.34%)	17,970 (5.97%)
교통약자 택시	993,753 (100.00%)	200,063 (20.13%)	167,349 (16.84%)	131,697 (13.25%)	169,659 (17.07%)	115,420 (11.61%)	89,902 (9.05%)	19,252 (1.94%)	5,070 (0.51%)	95,341 (9.59%)
회원 1인당	42.7	35.38	39.49	33.9	67.43	60.15	50.06	42.18	29.89	44.11

○ 평균 대기시간(휠체어·비휠체어별)

구분	계	특별교통수단차			교통약자택시		
		소계	휠체어	비 휠체어	소계	휠체어	비 휠체어
이용건수 (%)	1,294,677 100%	300,924 23.24%	159,333 12.31%	141,591 10.94%	993,753 76.76%	59,182 4.57%	934,571 72.19%
평균 대기시간	00:17:30	00:26:57	00:28:42	00:24:59	00:14:38	00:15:19	00:14:36